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0

발의연월일: 2020. 6. 17.

발 의 자:이재정・김진표・진성준

임오경・양향자・허 영

이인영 · 송영길 · 양기대

조정식 · 김경협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 개(외교부 111개, 타 부처 295개)이고,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,353억 원인데 그중 외교부가 약 60%. 타 부처가 약 40%를 부담하고 있음.

또한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,390억 4,500만원이며,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.5%인 3,458억원, 재량분담금은 약 45.5%인 2,890억원이고,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·집행되고있음.

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

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야 하며,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·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나. 국제기구 분담금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함(안 제5조).
- 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,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).
- 라. 위원회는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·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 (안 제6조제3항).
- 마. 위원회는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(안 제6조제4항).

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국제기구 분담금"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. 다만,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「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)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 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·집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)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- 1.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
 - 2.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
 - 3.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)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,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

야 한다.

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·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, 자체평가 결과,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